

의안번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350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장
제안연월일	2016년 8월 일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6년 8월 일

제 안 자 : 산업경제위원장

## 제안 이유

-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임
- 이 법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학교, 언론사, 공직자 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함은 물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경제에 대한 농축수산업의 기여도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행대상 품목 중 농축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함

붙 임 : 건의안

보낼곳 : 청와대, 국회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정무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고자 학교, 언론사, 공직자 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함은 물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타파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하는 법의 제정취지는 대부분의 국민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농축수산물의 경우 40% 가량이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인 설, 추석 등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대부분 5만원 이상으로 이 법에 저촉됩니다.

명절기간에 판매되는 선물세트의 경우 과일 50%, 인삼 70%, 한우고기 98%, 수산물 60%가 5만원 이상인데 이는 선물의 제한가 기준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농축수산인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설, 추석 등 명절에 판매되는 농축수산물, 특히 사과는 연중 판매량의 40%, 배는 70%에 이르고 한우고기는 평월보다 약 2.5배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제한가가 턱없이 낮아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 명절 수요가 사라져 사실상 유통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내수가 침체되어 그 피해는 모두 농축수산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농축수산인들은 WTO, FTA 등으로 농축수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매번 희생되어 이미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이 대거 유입되어 우리의 농어가는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고 어렵게 유지돼온 생산기반이 붕괴될 수 밖에 없으며 농어촌 공동화 현상 역시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국민경제에 대한 농수축산업의 기여도와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행대상 품목 중 농축수산물 제외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품목에 농축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2016년 9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